



제429회국회(정기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2025. 11.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개요 1

1. 세입예산안 1

가. 개 요 1

2. 세출예산안 3

가. 총 괄 3

나. 성질별 세출예산안 현황 5

II.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의견 9

1. 인건비(총액)(1001-100) 9

가. 개 요 9

나. 국가인권교육원 직제 협의 조속한 완료 및 적정 수준 인건비 반영 검토 필요 9

2. 기관운영 기본경비(1011-250) 13

가. 개 요 13

나. 전원위원회·상임위원회 속기 직원 직제 반영 검토 필요 13

다. 인권도서관 운영 예산 주요사업비로 이관 검토 필요 17

3. 지역인권문화 확산(1031-303)	21
가. 개 요	21
나. 신규 사업인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 조성의 차별화된 기획·운영 필요	21
4.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1032-301)	25
가. 개 요	25
나. 국가인권교육원 차질 없는 준공 및 개원 준비 필요	25
5.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1034-301)	29
가. 개 요	29
나.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외부 의뢰 근거 마련 필요	29
다. 국가인권통계 제공 방식 다양화 검토 및 국가인권통계포털 구축을 위한 적정 예산 확보 필요	34
6. 국내교류협력(1036-303)	37
가. 개 요	37
나.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 성과관리 내실화 검토 필요	37
7.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기한 준수 노력 필요	43
8.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공표 실시 방법 검토 필요	47

I.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개요

1. 세입예산안

가. 개 요

202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700만원으로, 2025년도 2,700만원 대비 3,000만원(111.1%)이 증액됨.

주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행정소송관련 법원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증가분 및 송달료 정산분 징수액 증가에 따라 기타경상이전수입에서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예산 (A)	2026 예산안 (B)	증 감 (B-A)	%
세입	27	57	30	111.1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기타경상이전수입」은 호봉정정 등에 따른 과년도 급여 정산금 환수금액 및 소송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및 송달료 정산분 등으로 2025년도 2,000만원 대비 3,000만원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음.

「과태료」는 2025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의 거부·기피·방해 및 자료제출요구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유¹⁾가 발생할 것을 감안하여 편성한 것임.

그 밖에 「기타재산이자수입」과 「기타잡수입」도 2025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1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2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세입예산안 규모 및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예산 (A)	2026 예산안 (B)	증 감 (B-A)	%	비 고
기타재산이자수입	1	1	전년동		민간단체 경상보조비 이자 정산 세입세출 외 현금이자 발생
과 태 료	5	5	전년동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 (과태료) 조사방해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20	50	30	150.0	「국고금 관리법」 제29조 (지출금의 반납) 등
기 타 잡 수 입	1	1	전년동		공적항공마일리지 구매대금 등
합계	27	57	30	111.1	

-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24조제1항 또는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
- ②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2. 세출예산안

가. 총괄

202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438억 1,700만원으로, 2025년도 세출예산 424억 1,400만원 대비 14억 300만원 (3.3%)이 증액됨.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① 2026년 상반기에 개원되는 국가인권교육원의 운영준비를 위하여 사무실, 강의실 등 집기류 구입, 버스 구입 및 운전원 채용, 이전비, 홍보비 및 개원식 비용 등 16억 6,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② ‘인권이음터 운영’ 사업 예산 4억 500만원이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사업에서 「지역인권문화 확산」 사업으로 이관 편성되었으며,

③ 노후화된 행정업무포털(외부망)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9,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④ 2025년 인권체험관 원상복구 사업 완료에 따라 1억 2,600만원이 순감되었고, 지출구조조정에 따라 ‘인권현장 대응’ 사업(1,200만원), ‘사회복지 인권개선’ 사업(4,500만원)이 폐지되었고, ‘인권상황 실태조사’ 사업(1억 3,700만원) 등이 감액되었음.

[202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예산 (A)	2026 예산안 (B)	증 감 (B-A)	%
세출	42,414	43,817	1,403	3.3

나. 성질별 세출예산안 현황

202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세출예산안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2025년도 예산 대비 5억 4,400만원(2.5%) 증액된 224억 800만원, 기본경비는 2025년도 예산 대비 1억 2,900만원(1.3%) 증액된 102억 6,000만원, 주요사업비는 2025년도 예산 대비 7억 3,000만원(7.0%) 증액된 111억 4,900만원이 각각 편성됨.

[2026년도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예산 (A)	구성비 (%)	2026 예산안 (B)	구성비 (%)	증 감 (B-A)	%
인 건 비	21,864	51.5	22,408	51.1	544	2.5
기 본 경 비	10,131	23.9	10,260	23.4	129	1.3
주요사업비	10,419	24.6	11,149	25.5	730	7.0
합계	42,414	100.0	43,817	100.0	1,403	3.3

202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비를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먼저 증액된 세부사업을 보면,

첫째, 「지역인권문화 확산」 사업은 인권이음터 운영 사업 이관 편성 및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 조성 사업 신규 편성 등의 사유로 3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둘째,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사업은 2026년 상반기 개원예정인 국가인권교육원의 운영준비를 위한 사업 편성 등의 사유로 6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셋째, 「차별시정 및 혐오 대응 강화」 사업은 해외차별금지법제 시행 및 영향 등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사업 신규 편성 등의 사유로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넷째,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은 노후화된 행정업무포털 시스템 개선을 위한 사업 신규 편성 등의 사유로 1,700만원이 증액되었음.

다음으로 감액된 세부사업을 보면,

첫째, 「인권의식 증진」 사업은 인권콘텐츠 제작비용 축소로 6,100만원이 감액되었고,

둘째,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사업은 인권현장 대응 사업 폐지 등으로 1,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셋째, 「취약분야 인권개선」 사업은 사회복지 인권개선 모니터링 사업 폐지 등으로 5,000만원이 감액되었음.

넷째,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사업은 실태조사 축소로 1억 1,800

만원이 감액되었고,

다섯째, 「북한인권 개선」 사업은 북한인권 정책기반 조성 위한 토론회 등 운영경비 축소로 3,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여섯째,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국제인권 실태조사 축소 등으로 7,100만원이 감액되었음.

일곱째, 「국내교류협력」 사업은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 사업 축소 등으로 1,900만원이 감액되었음.

그 밖에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과 「e-진정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은 각각 전년동으로 편성되었음.

[2026년도 주요사업비 예산안 증감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단위사업/세부사업)	2025년도 (A)	2026년도 (B)	증 감 (B-A)	%
총 계	10,419	11,149	730	7.0
□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914	1,202	288	31.5
○ 인권의식 증진	680	619	△61	△9.0
○ 지역인권문화 확산	234	583	349	149.1
□ 인권교육 활성화	2,667	3,366	699	26.2
○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2,667	3,366	699	26.2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2,487	2,451	△36	△1.4
○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160	146	△14	△8.8
○ 취약분야 인권개선	1,151	1,101	△50	△4.3
○ 장애인 인권증진	435	435	-	-
○ 차별시정 및 혐오 대응 강화	231	281	50	21.6
○ 군인권보호 및 증진	510	488	△22	△4.3

사업명 (단위사업/세부사업)	2025년도 (A)	2026년도 (B)	증 감 (B-A)	
				%
□ 인권제도 선진화	1,390	1,242	△148	△10.6
○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1,205	1,087	△118	△9.8
○ 북한인권 개선	185	155	△30	△16.2
□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1,450	1,360	△90	△6.2
○ 국제교류협력	1,240	1,169	△71	△5.7
○ 국내교류협력	210	191	△19	△9.0
□ 인권위 정보화	1,511	1,528	17	1.1
○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902	919	17	1.9
○ e-진정시스템 구축운영	609	609	-	-

Ⅱ.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의견

1. 인건비(총액)(1001-100)

가. 개 요

「인건비(총액)」는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그 밖의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공무원에게 봉급(연봉) 및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금년 대비 5억 4,400만원(2.5%) 증액된 224억 800만원임.

[2026년도 인건비(총액)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 결산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 감	
				(B-A)	%
인건비(총액)	20,614	21,864	22,408	544	2.5

나. 국가인권교육원 직제 협의 조속한 완료 및 적정 수준 인건비 반영 검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공공, 시민영역 전반에 걸쳐 인권교육을 확대·심화하기 위한 전문교육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하여 ‘국가인권교육원 설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4년 3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였고 2025년 12월 준공하여 2026년 4월

개원할 예정임.

한편, 국가인권교육원의 설치 및 업무 등을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²⁾이 2025. 6. 4. 시행(2024. 12. 3. 공포)되었는데,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하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³⁾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2025년 10월 현재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3월 행정안전부와 국가인권교육원의 직제 규모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고 2025년 4월 증원되는 14명에 대한 예산 협의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였는데, 행정안전부의 직제안에 대하여 수용 입장인 기획재정부가 정무적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 협의를 연기함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11억 3,800만원)⁴⁾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
-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의2(국가인권교육원) ①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인권교육원을 둔다.
② 국가인권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교육 분야의 전문가 및 강사 양성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 등 인권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위원회가 실시하는 인권교육의 지원 및 관리
4. 인권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
5. 그 밖에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가인권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그 밖에 국가인권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 5. 19. 국가인권교육원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음.
- 4) 2026년 1월을 기준으로 책정한 12개월분 소요예산임.

<증원 14명에 대한 예산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게다가, 국가인권교육원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집중유발시설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관계부처 간 이견⁶⁾으로 인하여 국가인권교육원의 조직 형태(하부조직 또는 소속기관)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함.

구 분	금 액	내 역
4·5급 1명	122	봉급,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5급 5명	477	봉급,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6급 5명	364	봉급, 연가보상비,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시간외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7급 3명	175	봉급, 연가보상비,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시간외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계	1,138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산정할 때 대지가 연접하고 소유자(제3호의 공공 청사인 경우에는 사용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도서관, 전시장, 공연장, 군사시설 중 군부대의 청사, 국가정보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

6)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협의 경과

-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 6월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교육원을 인권위 소속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은 2022년 6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인권위 인권교육원 청사를 직제상 소속기관으로 설치하지 않을 것)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이와 관련한 「수도권정비계획법」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국토교통부 협의 추진
- 인권위는 기본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이 법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을 존중하여 이를 이행
- 2024년 12월 국회에서 인권위법이 개정되었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교육원을 부속기관(소속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을 전제(국회 운영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로 논의된 만큼 교육원을 인권위 소속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추진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근거로 반대하여 무산
- 이를 해소하고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대상 시설(인구집중유발시설)에 교육원 청사가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법제처 유권해석 추진 중
- 이와 함께 교육원을 소속기관이 아닌 본부에 설치하는 직제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교육원의 직제 협의 경과 및 내용]

- 2025년 3월, 행정안전부와 국가인권교육원 직제 협의 완료
 - 기구: +1원 △1관 ±2과(인권교육기획과, 인권교육운영과) +1팀(인권교육콘텐츠팀)
 - 정원: +14명, ±1명(한시정원 상시화), ±18명(재배치)
 - (증원) +14명(4·5급1, 5급5, 6급5, 7급3)
 - (한시정원 상시화) ±1명(5급1)
 - (재배치) ±18명(고위나1, 4급2, 4·5급1, 5급5, 6급6, 7급2, 9급1)
- 2024년 4월, 기획재정부에 예산 협의 요청
 - 정무적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 협의 연기
- 2025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법제처 국가인권교육원의 조직 형태(하부조직 또는 소속기관) 협의 중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교육원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2026년 4월 개원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교육원의 조직 형태에 관한 관계부처 간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고 조직·직제 및 운영 등에 관한 하위법령을 신속히 개정 및 정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신설되는 국가인권교육원이 소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규모의 인력을 갖추고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직제 협의 결과 증원되는 14명에 대한 봉급 및 각종 수당에 소요되는 적정 예산을 인건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기관운영 기본경비(1011-250)

가. 개 요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일반수용비, 여비 등을 편성한 예산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금년 대비 2,100만원(0.3%) 증액된 78억 1,500만원임.

[2026년도 기관운영 기본경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 결산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 감	
				(B-A)	%
기관운영 기본경비	6,906	7,794	7,815	21	0.3

나. 전원위원회 · 상임위원회 속기 직원 직제 반영 검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는 전원위원회 · 상임위원회 ·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구분됨.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인권위원 11명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는 월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필요한 경우 임시회의 개최 가능)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3명)으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는 주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필요한 경우 임시회의 개최 가능)하는데,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회의록과 별도로

속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함.⁷⁾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속기 담당 인력을 직제상 두고 있지 않고,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210-01)로 속기사 사례비를 편성하여 민간인인 속기 업무 프리랜서(개인사업자)에게 속기를 의뢰한 후 사례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속기록 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속기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⁸⁾]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2021	35,280	27,615	7,665	78.3
2022	33,516	27,090	6,426	80.8
2023	33,516	23,625	9,891	70.5
2024	33,516	33,915	-	101.2
2025. 9.	33,516	21,315	-	63.6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그러나, ①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속기록은 규칙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보관되어야 하고, ② 회의 내용에 관한 1차적 자료인 속

7)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회의록의 작성) ③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회의록과 별도로 속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④ 간사는 작성된 회의록(속기록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을 각 위원회 차기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 회의록 및 속기록은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의 절차와 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8) 2026년도 예산안에도 속기 예산 3,352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기록에는 인권위원의 발언 등이 사실대로 누락 없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③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등에 관한 사항 등 민감한 사안과 개인정보 등 비공개사항을 다루고 있으며,⁹⁾ ④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가 상시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외부 민간위탁 방식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체 수행하는 방식으로 속기록 작성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비공개 대상 사안의 심의 및 결정 시 보안 조치의 용이성,¹⁰⁾ 회의록 작성 비용의 절감,¹¹⁾ 국가인권위원회 회의 기록의 중요성¹²⁾ 및 회의록 작성 대상 확대 등을 감안하여 관계 부처에 정기직제 요구 시 속기 직원 충원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수용되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속기 직원 충원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힘.

9)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 조정위원, 자문위원 또는 직원 등에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간인은 비밀누설 금지 의무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2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 조정위원, 자문위원 또는 직원이거나 그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비밀누설)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및 결정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밀이 포함된 사항도 결정함. 불가피하게 외부 속기사에 대한 보안유지 서약 등 보안조치를 통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를 심의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 직접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외부 속기사보다 보안조치가 용이함.

11) 반복적·일상적 업무인 속기록 작성 업무를 외부 속기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월 300만원 정도 사례금 지급이 필요하고, 6개 소위원회까지 추가 의뢰하는 경우 월 600만원 이상 사례금 지급이 필요함. 속기직원(1명) 채용 시 외부 속기사보다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됨.

12) 각 쟁점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가진 인권위원의 논의가 담긴 회의록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기록임.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확하고 효과적인 속기록 작성과 안정적
· 체계적인 속기록 보관·관리, 회의 내용 중 민감사안 또는 개인정보
의 보호 등을 위하여, 속기 직원의 직제 반영 방안을 검토하고 조직·
인력 관련 부처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음.

다. 인권도서관 운영 예산 주요사업비로 이관 검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7조 및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정리·보존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인권도서관을 두고 있음.¹³⁾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WEB DB 정기 구독, 견학프로그램 운영,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도서·비도서·연속간행물 구입 등의 명목으로 2억 700만원의 인권도서관 본관 운영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2026년도 인권도서관 본관 운영 관련 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세 목	예산액	내 역
일반수용비 (210-01)	63,679	○ 자료선정 등 전문가 자문료, 상호대차수수료 ○ WEB DB 정기 구독(국내·국외) ○ 신문 구독 ○ 인권도서관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 인권도서관 자료회원 운영 ○ WEB접근성 품질마크 갱신심사 ○ 견학프로그램 운영 ○ 자료정리용품 및 사무용품 구입

- 1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7조(인권도서관) ① 위원회는 인권도서관을 둘 수 있다.
 ② 인권도서관은 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정리·보존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4조(도서관 주요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2. 도서관 자료의 열람·대출 및 정보서비스 제공
 3. 전자도서관 구축·운영 등의 도서관 정보화
 4. 국내외 도서관 등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5. 간행물 번호부여 및 관리
 6.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세 목	예산액	내 역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880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전문도서관협회의회 연회비
시설장비유지비 (210-09)	20,000	○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국내여비 (220-01)	1,030	○ 인권도서관 국내 여비
자산취득비 (430-01)	121,437	○ 도서(동양서·서양서) 구입(e-book 포함) ○ 비도서 구입(영상자료 포함) ○ 연속간행물 구입(국내·국외)
계	207,026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그런데, 인권도서관 본관 운영 예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본경비보다 주요사업비로 이관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첫째, 기본경비에 편성되어 있는 인권도서관 본관 운영 예산은 열람용 도서 구입비, WEB DB 구독, 홍보비용, 견학프로그램 운영비 등인데, 해당 예산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7조 및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인권도서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기본경비로 편성할 수 있는 ‘기본행정경비’인 실·국·과 단위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의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기본경비 적용대상	
□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경비	
① 기본행정경비	
- 실·국·과 단위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	
- 인원·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직책수행경비, 과운영비, 급식비 등 기준성 경비	
- 공무원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교육훈련 경비	
- 맞춤형 복지 시행에 따른 경비	

둘째, 기본경비는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업비 성격의 인권도서관 본관 운영 예산을 기본경비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인권도서관 이용자 수, 만족도 등 인권도서관 운영 사업의 성과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¹⁴⁾

셋째, 국회운영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인권도서관 본관 운영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해당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본경비에 편성된 해당 예산을 주요사업비인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으로 이관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그간 인권도서관의 운영 예산의 대부분은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경비인 자료구입비로 편성되어 왔으며, 인권도서관 운영 예산이 주요사업비로 조정될 경우 인권

14)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가 2024년에 실시한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인지도 조사」에 인권도서관 관련 내용은 없음.

도서관 장서 구축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기본경비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면서,

2026년 상반기 국가인권교육원 개원을 앞두고 인권도서관의 직제 개편,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주요사업비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힘.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도서관 본관 운영 관련 예산을 주요사업비로 이관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3. 지역인권문화 확산(1031-303)

가. 개 요

「지역인권문화 확산」은 지역인권 네트워크 및 인권문화 확산, 인권이음터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금년 대비 3억 4,900만원(149.1%) 증액된 5억 8,300만원임.

[2026년도 지역인권문화 확산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 결산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 감	
				(B-A)	%
지역인권문화 확산	149	234	583	349	149.1

나. 신규 사업인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 조성의 차별화된 기획·운영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공동체(교원·학생·학부모 등)가 인권을 주도적으로 학습·실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인권문화 확산」에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 조성’ 예산 7,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2026년도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 조성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천원)

세 목	예산액	산출내역
일반수용비 (210-01)	8,000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 조성 8,000 - 자문회의 참석 사례비 1,800,000원×1식= 1,800 - 기획 워크숍 강사 사례비 2,400,000원×1식= 2,400 - 사례모음 자료집 인쇄비 3,840,000원×1식= 3,840
일반용역비 (210-14)	70,000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 조성 70,000 -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 조성 업무 위탁 60,000,000원×1식= 60,000 - 사례전과 영상제작 및 보고서작성 업무위탁 10,000,000원×1식= 10,000
계	78,00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 조성 사업의 내용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기반으로 학교 구성원의 인권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자료 개발, 참여형 워크숍, 학교규칙 모니터링, 인권문화 캠페인 등을 통하여 학교공동체 구성원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② 각 인권사무소를 중심으로 권역별 교육청 및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 각 학교 인권환경 특성이나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통하여 현장 상황에 기반한 문제 해결과 효율적 협력 모델을 마련하며, ③ 학교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와 기획에 중점을 두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기획단계에서의 정책적 조언, 워크숍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협력 혹은 운영 성과의 전국적 확

산 등을 통하여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과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다
각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 조성 사업 내용 예시]

- ① 인권교육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업 설계
- ② 참여학교 담당자 등을 위한 워크숍 운영
: 사업수행자의 위치와 역할에 따라 인권에 대한 이해가 상이하고 특히 인성
· 배려·도덕 등의 개념과 혼동하는 일이 잦으므로 사업설명회 외에도
사업가이드, 상시 컨설팅, 참여당사자 교육 필요(코디네이터 운영)
- ③ 참여학교별 담당 코디네이터 운영으로 사업안내와 교육과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개발(필수 프로그램과 선택 프로그램 분리 다양한 선택지 제공,
학교공동체(학생, 교사, 보호자 등)별 맞춤 프로그램 제시)과 자료지원(위탁)
- (예시) 공동체 구성원 간 기초·참여규칙 수립, 학교규칙 인권 모니터링(체
크리스트 기반), 소통·회복 모델 적용, AI등 디지털시대 미디어리터러시
및 혐오차별 대응 역량강화, 감정노동·교권·학생인권 상호이해, 지역현안
연계 인권문화 캠페인 등
- ④ 프로그램 운영과정 취재 및 우수 사례 영상 등 제작(위탁)
- (예시) 학교 내 의사결정·소통 방식 변화 사례, 갈등 예방·해결 사례, 프
로그램 운영결과보고서, 교육청·학교 제도 반영(지침·연수과정 등)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세부사업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의 내
역사업인 「인권교육 정책 제도 기반 구축 및 국내외 협력」에 인권친
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집행¹⁵⁾하고 있고, 세부사업 「취약분야 인권개선」의 내역사업
인 「아동인권 증진」에서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방안 모색을 위한
아동인권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새로 시작하는 ‘인권친
화적 학교공동체 조성’ 사업과 다소 중복되어 보이는 측면이 있음.

15) 2026년도 예산안에는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으로 7,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인권교육을 정규 교육과정 안에 체계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제도적 측면을, ‘아동인권 모니터링’ 사업은 국제인권기준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정책적 측면을 맡고 있어 현장 맞춤형 협력 사업을 운영하는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 조성’ 사업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면서,¹⁶⁾

학교 내 인권 존중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제도적 기반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인권의식과 상호 존중 문화가 함께 확립되어야 하며, 다른 세부사업에서 수행 중인 기존의 학교 인권 관련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새로 시작하는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 조성 사업이 다른 세부사업에서 수행 중인 기존의 학교 인권 관련 사업과 차별성을 갖추고 그 기획 의도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고 세부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마련하는 한편, 기존의 학교 인권 관련 사업에서 얻은 정책적·제도적 결과물을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 조성 사업에 효과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임.

16)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및 ‘아동인권 모니터링’의 목적 및 내용

구분	목적 및 내용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 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 인권교육 제도화를 위한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개발 ○ 인권과목 신설 및 인권교육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아동인권 모니터링	○ 국제인권기준(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의 국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아동·청소년 인권증진 정책과제를 발굴 ○ 매년 주제를 정하여 현장·당사자·정책을 조사하고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4.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1032-301)

가. 개 요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은 국가인권교육원 운영 준비, 인권교육 과정 운영, 인권교육 제도화 및 협력체계 구축,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금년 대비 6억 9,900만원(26.2%) 증액된 33억 6,600만원임.

[2026년도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 결산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 감	
				(B-A)	%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1,832	2,667	3,366	699	26.2

나. 국가인권교육원 차질 없는 준공 및 개원 준비 필요

국가인권교육원 설립 사업은 2024년 3월 건축 공사를 착공한 후 2025년 1월 구조물 증축 공사를 시작하여 당초 2025. 11. 5. 건축물을 준공하고 2026년 4월 개원할 예정이었음.

[국가인권교육원 설립 공사 및 개원 준비 공사 일정]

주요 내용	일 정	세부 내용
설계	2021. 12.	○ 기본설계
	2022. 12.	○ 실시설계
건축 공사	2024. 3.	○ 착공
	~ 2024. 9.	○ 구조물 해체 및 주출입구 진입로 공사
	~ 2025. 1.	○ 구조물 증축 공사
	~ 2025. 9.	○ 전기·통신·소방공사 ○ 우·오수 관로공사, 포장공사 ○ 내·외부 마감, 도장, 조경 공사
	~ 2025. 11.	○ 시운전 및 준공 준비 ○ 건축물 준공 : 2025. 11. 5.
인테리어 공사	~ 2025. 4.	○ 인테리어 설계 용역
	~ 2025. 12.	○ 인테리어 시공
추가 공사 등	~ 2026. 2.	○ 전기·통신(네트워크) 설비 공사 ○ 방송 설비 공사 ○ 사무실 이전 관련 공사
	~ 2026. 3.	○ 각종 기자재 구매 및 설치 공사
개원	2026. 상반기	○ 국가인권교육원 개원식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9월말 기준 국가인권교육원 설립 공사 공정률은 약 90.0%로서, 당초 계획상 준공일인 2025. 11. 5.보다 1개월 늦춰진 2025. 12. 5. 준공을 예정하고 있으며 당초 2025년 9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포장공사는 10월까지, 내·외부 마감공사 및 조경공사는 11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교육원 개원에 맞추어 운영 준비 예산 16억 6,600만원을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은 현판 제작 및 홍보 등 5,700만원, 이전비 및 개원식 위탁 등 7,400만원, 공사비 9,000만원, 버스운전원 임금 4,000만원, 사무집기류 구입 등 14억 500만원임.

[2026년도 국가인권교육원 운영 준비 예산안 편성내역]

비 목	산출내역	집행 계획
상용임금(110-03) : 32,344천원	· 버스운전원 32,344,000원×1명=32,344천원	· 2026. 4. 공무원 채용 이후 매월 집행예정
일반수용비(210-01) : 56,900천원	· 내외부 안내판 제작 등 (31,900천원) - 내외부 안내판 31,900,000원×1식=31,900천원 · 인권교육원 홍보 (25,000천원) - 홍보콘텐츠제작 25,000,000원×1식=25,000천원	· 2026. 1. ~ 3. 제작 및 설치 예정 · 2026. 1. ~ 3.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복리후생비(210-12) : 428천원	· 버스운전원 428,000원×1명=428천원	· 2026. 4. 공무원 채용 이후 집행
일반용역비(210-14) : 73,670천원	· 이사비 (13,670천원) - 이사 전문업체 위탁 1식×13,670,000원=13,670천원 · 인권교육원 개원식 (30,000천원) - 개원식 전문업체 위탁 1식×30,000,000원=30,000천원 · 스튜디오실 방송장비구축 (30,000천원) - 방송장비구축용역 1식×30,000,000원=30,000천원	· 2026. 3. 집행예정 · 2026. 4. 집행예정 · 2026. 4. ~ 10. 용역 진행 및 집행예정
고용부담금(320-09) : 7,361천원	· 버스운전원 7,361,000원×1명=7,361천원	· 2026. 4. 공무원 채용 이후 집행
공사비(420-03) : 90,177천원	· 전기·통신 설비 공사 (90,177천원) - 전기 설비 공사 26,774천원 - 통신 설비 공사 44,000천원 - 방송 설비 공사 19,403천원	· 2026. 1. ~ 3. 공사 진행 및 집행예정

비 목	산출내역	집행 계획
자산취득비(430-01) : 1,405,396천원	• 사무집기류 484,020천원 • 정보통신류 213,488천원 • 방송설비류 408,625천원 • 주차관제설비 1식 × 49,262,790원 = 49,263천원 • 셔틀버스 250,000,000원×1식=250,000천원	• 2026. 1. ~ 3. 구매 · 설치 및 집행예정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현재 당초 예정보다 준공이 1개월 정도 지연된 상황으로 전체 공사 일정 및 개원 일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만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개원이 더 늦어지는 경우 국가인권교육원 개원 후 적용하기 위하여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 및 기본교재 활용 또한 지연될 수 있고,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운영 준비 예산 중 버스운전원 임금 등과 같이 개원 시점 이후 연중 집행되는 예산은 개원 시기에 영향을 받아 집행률이 낮아질 수도 있음.¹⁷⁾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교육원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공 및 개원될 수 있도록 일정 및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¹⁸⁾

17) 그 밖에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중 국가인권교육원 개원에 따른 인권교육과정 운영 횟수의 증대에 대비하여 2억 1,700만원 증액된 대상별 교육과정 예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18) 참고로, 현재 진행 중인 국가인권교육원 설립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국가인권교육원에서 진행될 예정인 장기·집중형 교육과정, 전국 단위 교육생 대상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교육생의 숙박 편의 및 교육 집중도·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교육원(용인특례시 신갈동 17-7)과 대지경계선을 접하고 있는 유희 부지(용인특례시 신갈동 17-27)를 활용한 기숙사의 신축을 향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기숙사 신축을 위한 기본설계비에 2억 8,000만원, 실시설계비에 3억 1,100만원이 소요됨.

5.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1034-301)

가. 개 요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은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을 도모하고 인권정책 개발 및 연구역량을 강화하며 국가인권정책 추진의 기초자료인 국가인권통계를 생산·분석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금년 대비 1억 1,800만원(△9.8%) 감액된 10억 8,700만원임.

[2026년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 결산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 감	
				(B-A)	%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1,237	1,205	1,087	△118	△9.8

나.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외부 의뢰 근거 마련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4호¹⁹⁾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수행 업무 중 하나로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음.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는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사업 방향 수립의 기초 자료를 축적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행하는 각종 법령·제도 등 관련 권고에 구체적인 근

1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거를 마련하기 위한 업무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도 있음.²⁰⁾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모두 연구용역을 통하여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사업에 2억 2,100만원 등 여러 세부사업에 걸쳐 총 16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2026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¹⁾	사업명	과제명	예산	담당부서
일반 과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1034-301)	인권상황 실태조사(일반과제)	221	인권정책과
특정 과제 (14)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1034-301)	기후위기에 따른 노동분야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실태조사	60	사회인권과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1032-301)	사법부 공무원의 인권교육 실태조사	60	인권교육 기획과
	취약분야 인권개선 (1033-301)	어업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50	인권침해 조사과
		노인 자살위험자 조기발견과 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70	사회인권과
		노인장기요양기관 돌봄서비스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및 평가지표 개발 실태조사	60	사회인권과
		취약계층 가정 아동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70	아동청소년 인권과

20)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2020, p.112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에서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법적 근거와 형식이 문제되는데, 조사 사무 등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의 근거 법령으로는 「정부조직법」(제6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장)을 들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조직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법적 근거로 보면 인권상황 실태조사 예산은 일반연구비(260-01)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구분 ¹⁾	사업명	과제명	예 산	담당부서
		아동청소년대상 혐오차별 실태조사	70	아동청소년 인권과
	장애인 인권증진 (1033-302)	발달장애인 의료 이용 실태조사	57	장애차별 조사1과
		지역사회 전환 등 장애인 탈시설 이행 상황 실태조사	57	장애차별 조사2과
	차별시정 및 혐오 대응 강화 (1033-303)	해외 차별금지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조사	70	차별시정 총괄과
		비혼 출산 여성 자기결정권 및 양육지원 실태조사	70	성차별 시정과
	군인권 보호 및 증진 (1033-304)	군대 내 일·가정 양립 근무 환경 및 현황 실태조사	55	군인권 협력지원과
		군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	55	군인권 보호총괄과
	북한인권 개선 (1034-303)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조사사례 분석 실태 조사	45	인권정책과
	소계(특정과제)		849	
기타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1034-301)	국가인권통계 분석 등 연구용역	100	인권정책과
		국가인권 통계 조사	500	
총계			1,67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한편, 국회운영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직·인력 운영 상황 및 수행 중인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또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21) 일반과제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 단계에서 과제 주제를 특정하지 않고 총액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공모, 부서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현안으로 제기되는 각종 인권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임. 특정과제는 국가인권위원회 중장기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로서, 매년 예산 편성 시 기획재정부에 소요 과제를 제출하여 편성하는 예산임.

사안에 해당하는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²²⁾에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외부전문가 의뢰 근거를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부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연구용역을 통하여 수행하도록 일반연구비(260-01)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 5. 19. 국가인권교육원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일응 경미한 사항으로 보이는 타법 개정 사항은 일부개정령(안)에 반영하면서도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전문가 의뢰 근거는 반영하지 않았음.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외부 의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다음 시행령 개정 시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임.²³⁾

22)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수행 업무로 실태조사와 평가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해당 실태조사와 평가를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실태조사·평가) 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실태조사·평가를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자료의 분석 등을 의뢰하거나 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공직자 등으로 평가 작업반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3)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도 인권정책 업무 방법 개선 계획(안)에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외부전문가 의뢰 근거 마련’을 포함(2025. 6. 18.)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검토 중에 있음.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제시된 부대의견을 존중하여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외부전문가 의뢰 근거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에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다. 국가인권통계 제공 방식 다양화 검토 및 국가인권통계 포털 구축을 위한 적정 예산 확보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 활용과 국내 인권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인권지표 개발을 위하여 2019년부터 매년 국가인권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통계 작성 업무를 연구용역의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일반연구비(260-01)를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에도 6억 1,000만원을 편성 하였음.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국가인권통계 일반연구비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실태조사명	계약상대방	계약금액
2020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연구용역(한국의 인권통계 2020)	(사)한국삶의질학회	99,978
	2020년 국가인권실태조사	통계청(통계대행과)	580,000
2021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연구용역(한국의 인권통계 2021)	(사)한국삶의질학회	99,079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	(주)한국리서치	540,000
2022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연구용역(한국의 인권통계 2022)	(사)한국삶의질학회	99,240
	2022년 인권의식 실태조사	(주)한국리서치	485,000
2023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연구용역(한국의 인권통계 2023)	(사)한국삶의질학회	97,921
	2023년 인권의식 실태조사	(주)한국리서치	490,000
2024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연구용역(한국의 인권통계 2024)	(사)한국삶의질학회	99,500
	2024년 인권의식 실태조사	(주)한국리서치	490,00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한편, 국가인권통계 작성 방식 및 현황, 공개 방식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정부기관 등에서 생산한 기존 통계 및 행정자료를 가공하여 얻은 통계 등과 ② ‘인권의식실태조사’²⁴⁾를 통하여 신규로 생성 또는 갱신된 통계 등을 검증·분석하여 인권영역·권리유형·인권주제별로 매년 460개~470개 정도의 국가인권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작성된 국가인권통계를 매년 간행물(「한국의 인권통계」) 형태로 발간하고 해당 간행물을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음.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국가인권통계 작성 현황]

(단위: 개)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통계수	460	474	467	468	472 ²⁵⁾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그런데, 작성된 국가인권통계 데이터가 인권정책 수립 및 인권상황 모니터링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통계 데이터를 조회·분류·가공·분석하여 다양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

24) 인권의식실태조사에 따른 통계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에 해당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하여 데이터가 온라인 서비스되고 있음.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5) 참고로, 2024년 작성된 472개 국가인권통계의 출처를 보면, 인권의식실태조사가 51건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421건 중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43건, 사회통합실태조사 42건, 사회조사 26건 등으로 나타난다.

제와 같은 간행물 형태의 공개만으로는 접근 편의성이 떨어지고 활용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²⁶⁾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통계 데이터의 온라인 서비스를 위하여 2024년 예산요구안부터 기획재정부에 ‘국가인권통계포털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예산을 제출하고 있으나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매년 예산을 투입하여 작성·축적되고 있는 국가인권통계의 접근 편의성 및 활용도를 보다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통계 데이터의 온라인 서비스,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한 개방, 오픈 API의 활용 등 다양한 제공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가인권통계 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온라인으로 다양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국가인권통계포털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²⁷⁾

26) 참고로, 정부부처의 통계데이터 제공 플랫폼으로는 행정안전부 행정안전통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샘터, 중소벤처기업부 통계DB검색, 국민권익위원회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산림청 산림통계시스템,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등이 있음.

27) 국회운영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국가인권통계포털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예산 1억원을 증액하였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음. 참고로, 해당 예산은 세부사업 「e-진정시스템 구축운영」에 편성되어야 함.

<국가인권통계포털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예산 산출내역>

세부사업	세 목	금 액	산출내역
e-진정시스템 구축운영 (1037-501)	일반연구비 (260-01)	100백만원	국가인권통계포털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100,000,000원×1식=100,00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6. 국내교류협력(1036-303)

가. 개 요

「국내교류협력」은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인권옹호활동을 지원하고 민간단체와의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방인권기구 및 인권단체와 공동협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금년 대비 1,900만원(△9.0%) 감액된 1억 9,100만원임.

[2026년도 국내교류협력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 결산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 감	
				(B-A)	%
국내교류협력	210	210	191	△19	△9.0

나.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 성과관리 내실화 검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 협력 증진과 인권의 저변을 확대·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매년 인권 과제 공모를 통하여 신청을 받아 보조사업 단체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에는 1억 5,400만원을 편성함.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에 38개 단체의 신청을 받아 13개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2025년에는 45개 단체의 신청을 받아 11개 기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2024년 지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전에 선정한 ‘지정주제’에 대하여 7개 보조사업을 실시하였고, ②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호²⁸⁾에 따른 ‘자율주제’에 대하여 6개 보조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각 단체별로 700만원~1,700만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음.

[2024년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 세부내역]

(단위: 천원)

단체명		사업명	보조금	자부담	집행액
지정 주제 (7개)	사단법인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	K-콘텐츠 시대의 방송미디어 노동자 권리보호 사업	10,560	880	10,560
	원주여성 민우회	혐오와 차별을 넘어! 오프더 혐오차별	15,640	1,000	15,640
	인권교육 공동체 숲	인권교육의 변곡점 공식 - 대전 인권교육 지속성 및 인권적 교육환경 마련을 위한 사업	8,600	700	8,600
	전북여성 노동자회	아는만큼 인권이 보인다! 안전한 일터 만들기 사업주부터	10,120	540	10,120

28)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와 유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8호 및 제10호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 중 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단체 및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율주제분야

- 가. 인권 옹호 및 신장을 도모할 새로운 분야(영역)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
- 나. 인권 관련단체 또는 국제기구 등과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
- 다. 국제인권조약 관련 사업 중 시의성 있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
- 라. 인권 증진에 관한 지역단체간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

2. 지정주제분야 : 인권증진행동계획, 인권 현안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단체명		사업명	보조금	자부담	집행액
	전쟁없는 세상	대체복무 신청자를 위한 안내서 제작 및 교육상담	9,000	700	9,000
	청년유니온	< 전국의 일하는 시민 모두 Right? Right! >	13,430	940	13,430
	한국성적소수자 문화인권센터	레인보우메이커 - 시민의 힘으로 혐오 확산에 맞서자.	15,660	1,350	15,660
자율주제 (6개)	극단 진동	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언어폭력 예방 뮤지컬 ‘온새미별’	16,800	1,365	16,800
	사단법인 성평등위아	나의 젠더 해방일지	15,340	1,540	15,340
	서울장애인 인권영화제	장애인 문화향유 증진과 장애인권영화 활성화를 위한 배리어프리 영화 매뉴얼 제작	12,320	1,050	12,320
	원주기독교청년회 (원주YMCA)	인권 다 다름, 제7회 원주인권박람회	6,760	510	6,760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청소년 인권캠프 ‘걸으면서 찾는 인권평화’	13,200	1,230	13,200
	인권연구소 창	인권의 새로운 도전 과제 대응과 인권이념의 재구축을 위한 “인권활동가 전략 캠프”	13,570	1,050	13,570
계(13개 사업)			161,000	12,855	161,00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²⁹⁾에 따라 주제 분야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공고하였는데, 지정주제의 경우에는 모니터링, 교육, 캠페인 등 사업 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성과목표 건수를 제시하고, 자율주제의 경우 ‘지정주제 성과목표에 준하는 수준으로 자체 설정’하도록 하였음.

29)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공고) 홍보협력과장은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금의 규모, 신청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때 제4조 각 호의 분야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2024년 주제별 성과목표 현황]

사업유형	성과목표
공통	성과목표에 만족도 조사 또는 FGI ³⁰⁾ 필수 적용
자율주제	❖ 지정주제 성과목표에 준하는 수준으로 자체 설정
지정주제	<직전년도(2023) 성과목표 기준을 참고한 예시임> ❖ 성과 목표 대비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예정, 성과 목표 세부 사항은 사업실행계획 수립 시 논의 후 확정 • 모니터링 사업: 모니터링 100건 이상 • 교육사업: 수강인원 연인원 100명 이상 • 캠페인 사업: 콘텐츠 게시 건수 30건 이상 또는 행사 3회 이상 (행사 1회를 콘텐츠 게시 10건으로 환산) • 협력사업: 협력사업 5회 이상 또는 참여 연인원 100명 이상(참여 인원 20명을 협력사업 1회로 환산) • 그 외 유형의 사업: 제시된 성과 목표에 준하는 수준으로 자체 설정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그런데, 일부 자율주제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건수를 제시하지 않고 지나치게 추상적인 내용을 성과목표로 설정하는 등 보조사업 성과관리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성과관리가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30) FGI: Focus Group Interview의 약자로, 특정한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인터뷰를 진행하는 조사 방법

[2024년 자율주제 성과목표 부적절 사례]

(단위: 천원, %)

사업명	보조금	성과목표	달성률
나의 젠더 해방일지	15,340	-사업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처음에 생각했던 젠더에 관한 편견과 오해로부터 벗어나고, 갈등과 혐오가 아닌 공감과 이해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	100
장애인 문화향유 증진과 장애인권영화 활성화를 위한 배리어프리 영화 매뉴얼 제작	12,320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 연구팀 모집 -영화 배리어프리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발표회	100
청소년 인권캠프 ‘걸으면서 찾는 인권평화’	13,200	-인권과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이해 증진 -인권 옹호 및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 참여 -팀워크 및 문제해결 능력 강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력과 캠프를 통한 인식과 행동의 변화 -참가자 수 및 참가자 피드백을 통한 만족도, 재참여 의사 및 추천도 평가(16개팀 80여명 참여)	10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의 경우 일부 자율주제 사업에서 구체적인 건수 제시 없이 추상적 내용을 성과목표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2025년에는 사업실행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모든 보조사업의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하여 성과관리의 내실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 사업의 성과 관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성과목표의 적정성·구체성·객관성 등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7.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기한 준수 노력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4항³¹⁾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각하하거나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진정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칙」 제40조제3항³²⁾은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기한을 ① 진정을 각하 또는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② 진정을 기각한 경우 의결일부터 14일 이내, ③ 권고 등을 의결한 경우에는 의결일부터 40일 이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각하 등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진정인이 다른 권리구제 체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임.

그런데, 2025년 9월 기준 진정사건 처리결과를 통지한 4,917건에 대하여 결정 유형별(각하·기각·인용) 처리결과 통지에 소요된 기간을 살펴보면,

① 진정사건 각하의 경우, 전체 2,241건 중 처리결과 통지에 7일 이

3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④ 위원회는 진정을 각하하거나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2)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칙」 제40조(사건처리결과 통지) ③ 사건처리결과 통지 기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두로 통보한 후 추후 문서를 송부할 수 있다.

1. 진정을 각하 또는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2. 진정을 기각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

3. 법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 등을 의결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40일 이내

4. 진정을 각하 또는 기각함과 동시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권고 내지 의견표명 등을 의결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40일 이내

상 소요되어 그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건수가 210건(9.4%)에 이르고, 2개월 이상 소요된 건수도 11건에 이름.

② 진정사건 기각의 경우, 전체 2,544건 중 처리결과 통지에 15일 이상 소요되어 그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건수가 156건(6.13%)에 이르고, 2개월 이상 소요된 건수도 10건에 달함.

③ 진정사건 인용(합의종결 제외)의 경우, 전체 125건 중 처리결과 통지에 40일 이상 소요되어 그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건수가 73건(58.4%)에 이르고, 3개월 이상 소요된 건수도 15건에 달하고 있음.

[2023년 ~ 2025년 9월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 현황]

(단위 : 건)

구 분	이 송			각 하			기 각			인 용(합의종결 제외)		
	'23	'24	'25	'23	'24	'25	'23	'24	'25	'23	'24	'25
7일 미만	26	15	6	2,654	2,427	2,031	2,324	1,504	1,575	6	3	8
7일 이상~15일 미만	1	0	0	167	124	118	1,752	1,847	813	5	3	0
15일 이상~40일 미만	1	0	1	62	65	65	285	405	134	77	54	44
40일 이상~60일 미만	0	0	0	12	13	16	146	27	12	90	67	25
60일 이상~90일 미만	0	0	0	9	6	6	19	13	10	142	70	33
90일 이상	0	0	0	5	23	5	6	15	0	128	31	15
합계	28	15	7	2,909	2,658	2,241	4,532	3,811	2,544	448	228	125
기한경과 건수*	2	-	1	255	231	210	456	460	156	360	168	73
기한경과 건수 비율	7.1%	-	14.3%	8.8%	8.7%	9.4%	10.1%	12.1%	6.1%	80.4%	73.7%	58.4%
통지기한	지체없이						의결일부터 14일 이내			의결일부터 40일 이내		

* 주: 이송 및 각하의 경우 7일 이상 소요된 건수를 계산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이와 같은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기한 지연이 발생하는 실무상 이유는 소위원회 등에서 진정사건에 대하여 각하·기각·인용 등의 결정을 한 이후에, 그 결정문을 작성하고 의결에 관여한 위원의 회람·확인 과정을 거쳐 결정문을 확정하는 데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³³⁾

한편,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기한 지연 문제에 대하여 국회는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사건 처리결과와 통지기한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이도록 시정요구하였고,³⁴⁾ 국가인권위원회 자체감사에서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 연속하여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 지연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에 ‘사건처리결과 통지 기한 처리방안 등’을 마련한 후 각 조사부서에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기한을 준수할 것을 독려하였고 2024년부터 매해 정기적으로 ‘인용 결정문 통지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조사부서에서 관련 규칙 및 규정에 따라 통지기한 내 처리결과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독려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³⁵⁾

33)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칙」 제39조(결정문 작성) ① 소위원회 등은 진정사건에 관하여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 제39조제1항에 따라 각하 또는 이송, 기각을 하면서 결정문 작성에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와 법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권고를 의결한 경우에는 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결정문에는 그 의결에 관여한 모든 인권위원이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 관여 인권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4)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부서에 ① 국회 지적사항 통보 ② 조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지기한 준수 ③ 진정사건을 90일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즉시 처리지연안내문 발송 ④ 조사부서의 장은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점검할 것 등을 공문으로 지시’하였다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였음.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자체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기한 미준수 문제가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35) 아울러, 통지기한을 경과한 사건목록이 e-진정시스템에서 통계로 산출될 수 있도록 e-진정시스템을 개선하여 통지기한 준수 여부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8.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공표 실시 방법 검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6항, 제44조제2항 및 제49조의2³⁶⁾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통지한 내용,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결과,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 결과, 관계기관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공표를 보도자료의 형식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음.

공표는 그 자체로서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사실행위로서의 통지로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공표(정보제공적 성격

3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 표명,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통지한 내용 및 제5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9조의2(처리 결과 등의 공개) 위원회는 이 장에 따른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 결과, 관계기관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공표)와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공표(제재적 성격의 공표)로 크게 구분되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행하는 공표 중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통지한 내용,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결과 등에 관한 공표는 제재적 성격의 공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공표를 보도자료의 형식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토론회·북토크·컨퍼런스 등 각종 행사 일정,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발표 및 기관 방문 등)와 관련된 보도자료와 함께 혼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 공표 내용의 검색·확인이 어렵고 공표의 효과가 저해되는 측면이 있어 보임.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공표 내용 확인의 편의성·용이성과 공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공표를 인권상담·진정·민원·조정·인권정보 등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인권e」 또는 보도자료와 별개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매체인 국가인권위원회 공보³⁷⁾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37) 「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과 의견표명, 제44조에 따른 구제조치 등의 권고결정은 공보에 게재되고, 공보는 홈페이지에 게시됨.

문 의 처
02)6788-5017